

DR 1000 KO (Rev. 05/2022)

재활 지원 부서(DOR)의 신청자 또는 고객으로서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재활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재활 상담사의 팀장과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 행정관에게 행정 재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에 대한 공식 요청과 함께 행정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문제는 지역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때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DOR 직원과 논의 시 가족, 기타 대리인 또는 대변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프로그램. 대변인을 찾거나 직업 재활 서비스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CAP: Client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웹사이트**(<http://www.disabilityrightsca.org/>)를 참조하거나, 전화(800-776-5746 또는 800-719-5798, TTY/TDD 청각장애 및 난청 통신 도구)로 문의하거나 **DOR 웹사이트**(<http://www.dor.ca.gov/>)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활 상담사. 대부분의 오해와 문제는 재활 상담사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활 상담사에게 문제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팀장. 귀하와 재활 상담사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 논의를 위해 팀장과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심사. 귀하는 조치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역 행정관에게 행정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심사 결정은 귀하가 더 늦은 날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역일 기준)에 이루어집니다. 행정 재심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재심사 관련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역일 기준)에 공정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재는 DOR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옵션입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DOR 조치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밀 중재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공정한 중재자는 귀하와 DOR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지원합니다. DOR이 중재하는 데 동의할 경우 귀하가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역일 기준 25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에 대한 서면 요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회. 귀하의 직업 재활 서비스 신청 또는 접수와 관련한 DOR의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DOR 조치 또는 결정 후 1년 이내에 또는 행정 재심사에 대한 서면 결정서(상단 참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회는 귀하가 더 늦은 날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역일 기준)에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심의회에 직접 출두할 수 있으며 귀하가 선택한 대리인 또는 대변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회를 요청하기 앞서, 행정 재심사 절차 또는 중재(상단 참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고등 법원에 집무 집행 영장(Writ of Mandat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를 요청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통해 DR 107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 요청 양식을 취득하십시오. DOR 중재 및 공정 심의회 사무소(DOR Mediation and Fair Hearing Office)에 916-558-5860번으로 전화, [DOR 이의제기 정보](#)(DOR Appeals Info, appealsinfo@dor.ca.gov)로 이메일 전송, [DOR 웹사이트](http://www.dor.ca.gov)(<http://www.dor.ca.gov>) 방문 또는 CAP 대변인에게 문의(상단 CAP 연락처 정보 참조).

차별.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출신국, 질병, 유전 정보, 성적 취향, 혼인 상태, 나이, 성별, 젠더, 성적체성, 젠더 표현, 군 복무 및 병역 여부 또는 보복과 같이 보호 대상 범주의 사유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인해 DOR, 계약업체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이 귀하에게 불법적 차별을 자행한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 옵션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케이스가 할당된 사무소를 감독하는 지역 행정관에게 행정 재심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귀하의 성함, 주소 및 전화번호, 이의제기를 접수할 당사자의 이름, 직함, 의혹을 제기하는 차별에 대한 설명, 보호 대상 범주 및 원하는 구제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OR의 민권 사무국(OCR: Office of Civil Rights)으로 차별 관련 이의제기를 접수합니다. 상세 정보가 필요하거나 차별 관련 이의제기 양식을 취득하려면 전화(916-558-5850) 또는 이메일(OCR@dor.ca.gov)로 DOR OCR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3) 미국 교육부 민권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에 이의제기를 접수합니다. 상세 정보는 전화(800-421-3481) 또는 이메일(OCR@ed.gov)로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행정 재심사 요청 및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 기반의 차별 또는 괴롭힘. 귀하가 DOR 또는 계약업체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이 성적 지향, 성적체성, 성희롱, 성폭력(예: 강간, 성폭행, 신체적 성추행 및 성적 강요) 등 성별로 인해 귀하 또는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혔다고 생각하실 경우 1972 교육수정법(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제9장(Title IX)에 따라 다음 옵션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우편(721 Capitol Mall,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이메일(OCR@dor.ca.gov) 또는 전화(916-558-5850)로 OCR 책임자 및 Title IX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916-857-9175로 OCR 및 Title IX 담당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 잠재적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교육부의 민권 사무국에 이의제기를 접수합니다. 800-421-3481로 전화하거나 OCR@ed.gov로 이메일을 전송해 미국 교육부의 민권 사무국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